

憲法改正特別委員會構成에 관한決議案

議案 番號	26
----------	----

發議年月日：1985. 5. 31.

發議者：金東英議員外 102 人

主 文

國會法第 44 條의 規定에 의하여 憲法改正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 委員은 與野同數로 한다.

提案理由

1980 年 10 月 27 日 改正公布된 現行憲法은 民主主義에 대한 우리의 基本信念과 當時 絶對多數國民들의 念願을 外面, 歪曲한 것으로서 一人統治를 合理化시켜주는 한갓 裝飾物에 不過하던 維新憲法의 非民主的 殘滓를 溫存·踏習한 채 民意僞裝의 要式行爲를 거쳐 만들어진 國民的 合意가 아닌 少數의 獨善的 恣意의 産物이었다.

이러한 國民的 合意와 이의 制度的 受容·收斂사이의 乖離가 필연적으로 結果한 極度の 政治的 不自由, 經濟的 不平等, 社會的 不正義의 渦中에서 이 나라는 昏迷속에 國難을 방불

하는 危機에 處해 있다.

이 時代는 主權在民이라는 民主主義 基本原則을 回復하고 三權分立과 國民基本權을 確保함과 아울러 自由競爭과 公正한 分配를 통한 經濟·社會的 正義가 實現되는 社會의 建設을 즐기차게 要求하고 있으며, 2·12 總選에 나타난 民意는 特히 主權者인 國民이 自由로운 選擇을 통해 自身의 손으로 大統領을 直接 뽑도록 함으로써 平和的 政權交替의 大道를 열어 政府의 正統性·正當性を 確立하는 것만이 危難에 當한 祖國의 現實을 匡救하는 捷徑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國民的 念願과 時代的 當爲를 實現하는 것이 國民의 代表機關인 우리 國會에 賦課된 가장 緊切한 使命임을 깨닫고 이 過渡期를 早速히 終息·清算하고 歷史的 必然으로서 우리앞에 到來하고 있는 第六共和國의 章典이 될 憲法을 準備하기 위해 國會內에 憲法改正特別委員會를 構成할 것을 提案한다.